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46
----------	-----

제출연월일 : 2008. 9. 1.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분야가 2006. 9. 27. 법률 제8014호에 의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공포(시행일 2007. 9. 28)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의 처리(안 제3조)

-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관할구역 분뇨처리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안 제4조)

- 제외지역 지정시 지정사유 명시하여 고시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안 제5조)

- 허가시 영업대상 및 필요한 조건 정할 수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안 제6조)

-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안내서 및 촉구서 작성·발송가능

○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안 제7조)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 체결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 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안 제8조)

-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수거 및 청소증명서 첨부하여 실적보고

○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안 제9조)

- 대행업자는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신고

○ 수수료의 징수(안 제10조)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조례안 【별표1】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1조)

-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영 별표8에 따름
-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보고·검사(안 제12조)

- 연 1회이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3.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6. 30 ~ 7. 21)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처리장의 사정으로 처리장 반입제한 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허가는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이행 안내서와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서의 작성·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확보 사항
4. 대행업자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때
2.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구청장이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 ① 대행업자는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 이행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거 및 청소증명서를 해당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구청 제출용)을 첨부하여 매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과 청소를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청소 후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가산금부과,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

-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8ℓ 당	195원	177원	18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		
	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 까지)	11,795원	11,045원	750원
초과요금 (매 100ℓ 당)	872원	772원	100원

비고 : 1. 분뇨처리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함.

2. 수수료는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양에 따라 징수한다.

3. 각 시설별 계산한 수수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9(생략)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 12(생략)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 15(생략)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p>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u>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u>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u></p> <p>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u>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p>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p>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3.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p>제80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16(생략)</p> <p>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p> <p>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p> <p>19~28(생략)</p>	

관 계 법 령 발 취

법령명	내 용	비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u>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회 이상 하여야 한다.</u></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p> <p style="padding-left: 20px;">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p> <p>2. <u>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u> 다만, 영 제4제 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체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p> <p>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p> <p>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4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9. 9(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08. 9. 16(화)
- 위원회상정 : 2008. 9. 23(화)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가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에 의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분뇨의 처리(안 제3조)
 -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관할구역 분뇨처리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안 제4조)
 - 제외지역 지정시 지정사유 명시하여 고시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안 제5조)
 - 허가시 영업대상 및 필요한 조건 정할 수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안 제6조)
 -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안내서 및 촉구서 작성·발송가능

○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안 제7조)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 체결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 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안 제8조)

-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수거 및 청소증명서 첨부하여 실적보고

○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안 제9조)

- 대행업자는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신고

○ 수수료의 징수(안 제10조)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조례안 【별표1】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1조)

-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영 별표8에 따름
-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보고·검사(안 제12조)

- 연 1회이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방영환)

- 본 조례안은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가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에 의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새로 제정된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다만,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조례안에 없는 내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